

## 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지침

제정 2020. 1. 31 예규 제6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동장일일순찰운영지침」의 개정) 안양시동장일일순찰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동장일일순찰운영지침”을 “안양시 동장 일일순찰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지침」의 개정) 안양시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지침”을 “안양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